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경찰행정학부 남궁 한 교수

가석방

□ 가석방[parole, 假釋放]

- ▶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선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 ▶ 가석방은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에 의하여 미리 석방하는 제도(형법 72조 1항)이다. 소년에 있어서는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不定期刑)에는 단기의 3분의 1이다(소년법 58조).
- ▶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잔형기(殘刑期)를 경과한 때에는(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76조 1항). 소년에 있어서는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을 경과하면 된다(소년법 59조).
- ▶ 가석방의 처분은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예외)(형법 74조), 감시에 관한 규칙에 위배한 때에는 취소될 수 있다(75조),

가석방 대상 및 기준

- ▶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동기,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가석방 허가

- ▶ 각 교정기관에서 위의 여러 조건들을 기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법무부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고, 신청된 수형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출소 - Q&A

Q 출소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교정시설의 수용자는 형기종료 혹은 가석방, 사면, 집행유예 등 여러가지 사유로 출소하게 되며, 출소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대조하며 본인의 영치금품을 돌려받는 등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소 절차>

1. 출소 사유 발생: 형기종료, 사면, 가석방, 집행유예 등
2. 지급품 반환
3. 설문서 작성: 수용생활 중 권리침해 여부, 기타 건의사항 등
4. 신분대조·출소교육: 출소자 본인 여부 확인, 출소증명서 발급
5. 영치금·품 환부: 품목별 확인
6. 석방

□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공식화



게티이미지뱅크

- ▶ 서울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이어진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 ▶ 법무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헌재는 사형제 헌법 소원을 심리 중이다.
- ▶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한 바 있다.

- ▶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구금의 형을 부과하는 형벌이다. 유기 자유형보다 형기가 길다는 점에서 무겁고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보다는 가볍다.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무기형과 달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면이나 가석방 등 감형 대상이 될 수 없다.**
- ▶ **한국 형법에는 사형제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26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현재 국제앰네스티 기준으로 한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 ▶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 등 사형제 집행 국가와 협약을 맺지 않는 국가와의 외교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 **국민의힘과 정부도 최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엔 사형제를 폐지하고 이를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사형제폐지특별법이 이미 발의돼 있다.**

□ 종신형(終身刑, life sentence, 무기징역, 무기형)

- ▶ 종신형(終身刑)은 수형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나 옥살이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 ▶ 무기형은 가석방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무기형과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 상대적 무기형 (상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있는 무기형을 말하며,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기형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무기수가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뇌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 ▶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고, 독일에서는 15년, 중화민국에서는 2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없는 무기형을 말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도 한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 제도를 운영하므로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은 이례적인 제도인데, 이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이 있다.
- ▶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는 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대체형벌로 논의되었다.
- ▶ < 만 18세 미만에 대한 금지 >
- ▶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조약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UN 가입국이 비준하였는데, 미국도 2012년 6월에 연방대법원에서 만 18세 미만에 대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 ▶ 한편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라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무기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 무기형을 금지해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칙에 따라 최장 20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 법무부,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위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요

- 법무부는 8. 14.(월)부터 9. 25.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출처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c0MjExJTJGYXJ0Y2xWaWV3LmRyJTNGcGFzc3dvcmQIM0QI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l2cmdzRW5kZGVtdHlM0QIMjZpc1ZpZXdNaW5lJTNEZmFsc2UI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EIM0QIMjZzcmNoQ29sdW1uJTNEJTl2c3JjaFdyZCUzRCUyNg%3D%3D>

-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뇌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되어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 최근 대법원(2023도2043)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 중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현 상황에서 사형이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으나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처벌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흉악범죄자에 대하여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로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함을 명확히 함

※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차례 합헌 결정('96년, '10년)을 한 바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3번째로 위헌 여부 심사가 심도깊게 진행 중이며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는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예방을 위한 위하력이 있으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

-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여 이러한 위험성도 없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 주요 내용

-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p><u>第42條(懲役 또는 禁錮의 期間) 懲役 또는 禁錮는 無期 또는 有期로 하고 有期는 1개월 以上 30년 以下로 한다. 但, 有期 懲役 또는 有期禁錮에 對하여 刑을 加重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u></p>	<p><u>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등) ①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u></p>

3. 향후 계획

-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검찰국 형사법제과	책임자	과 장	윤원기 (02-2110-3560)
		담당자	검 사	이정아 (02-2110-3564)



- ▶ 출처
- ▶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c0MjExJTJGYXJ0Y2xWaWV5LmRyJTNGcGFzc3dvcml0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l2cmdzRW5kZGVtdHl1M0QlMjZpc1ZpZXdNaW5jZmF7mFsc2UIMjZwYWdlJTNEUyNmJic09wZW5XcmRTZXEIM0QlMjZzcmNoQ29sdW1uJTNEJTl2c3JjaFdyZCUzRCUyNg%3D%3D>

□ 참고문헌

- ▶ 대법원 www.scourt.go.kr
- ▶ 법제처 :<https://easylaw.go.kr>
- ▶ 대검찰청 www.spo.go.kr
- ▶ 법무부 www.moj.go.kr
- ▶ 경찰청 www.police.go.kr